

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

「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」를 2회에 걸쳐 등기 송달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- 1. 건명: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
- 2. 근거: 고용보험법 제40조, 행정절차법 제14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명	생년월일	주소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 사유
이*기	1971.05.09	인천광역시 서구 여우재로112번길 12-(이하생략)	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	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에 따른 수급자격 불인정	수취인 부재로 2회 반송

- 4. 공고기간: 2024.3.21 . ~ 2024.4.4.(15일간)
- 5. 기타 사항은 인천서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김민선(☎032-540-20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3. 2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

